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람	기 관 의 장

공보

제 954 호 2015. 6. 29. (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07호[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09호[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11호[도로명주소 고시] ·····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12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6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593호[소하천공사 점용·사용 허가 공고] ·····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600호[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8

안내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회람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6 행정712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07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 가 번 호 : 제2015-0027호

나. 허가연월일 : 2015.06.29.

2. 점용·사용의 목적 : 진입로 사용을 위한 콘크리트 포장

3. 점용·사용의 장소 : 연암동 1304번지, 연암동 1306번지, 연암동 1306-2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영구 61㎡

나. 기 간 : 2015.06.29.~2020.05.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김 * *

나. 주 소 : 울산 북구 무룡로 ***-*(연암동)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109호

하천 점용(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대안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21

3. 점용(변경) 목적 및 개요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하천점용기간 연장

4. 점용(변경)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안동 산346-1천 외5필지
나. 면적 : 3,514㎡

5. 점용(변경) 허가의 유효기간
2013.08.21.~2015.07.1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111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모듈화산업로 201-7(연암동)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6.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379	울산광역시 북구 모듈화산업로 201-7(연암동)	2015-06-29	모듈화산업단지내에조성된도로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0-04-27	
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95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15(중산동)	2015-06-29	기존자연마을인약수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006	울산광역시 북구 모듈화산업로 8-7(효문동)	2015-06-29	모듈화산업단지내에조성된도로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0-04-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112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15(중산동)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약수2길 15(중산동)	2015. 6. 29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6. 29.**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 593호

소하천공사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		
	대표자 (성 명)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장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21
소하천명		우음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110번지, 1166-1번지		
	면적	5,833 ㎡		
	기간	2013년 08월 21일 ~ 2015년 7월 17일		
	목적 및 사유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변전소 공사 현장 가도확보기간 연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600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 개정이유

규제개혁 개선대상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문구의 수정 및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재차 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에 맞지 아니한 조항 정비 및 삭제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나.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관련 조항 정비 및 제한 사유 변경
(안 제16조, 안 제17조)

3. 근거법규

가.「유통산업발전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시행규칙」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창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창조경제과
- 전화번호 : 052-241-7702, 팩스번호 : 052-241-77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을 “법 제36조제4항 각 목에 해당하는 자”으로 하고, “가~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와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으로 하고, 제1호, 제2호를 삭제한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조건 등의 부과)”을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중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로 하며, 제1호 “1.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와 제2호 “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를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구성) ① (생 략)	제10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1. 법 제36조제4항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36조제4항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삭제
나. 북구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기업 대표	나. 삭제
다. 북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다. 삭제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삭제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삭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등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내용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 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신청이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삭제

현 행	개 정 안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을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4.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의결로서 결정한 사항	
제16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
1.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1. 삭제
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2. 삭제
②·③·④ (생 략)	②·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삭제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7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북구 유통산업의 진통과 진통시장 또는 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 ---------- ---------- ---------- ----------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